

학칙 개정안 신·구대조표

현 행	개정안	비고
<p>제3조 (수업연한) ① <u>본 대학교의</u> 신입생의 수업연한은 4년(8학기)으로 한다.</p> <p>② <u>본 대학교의</u> 편입생의 수업연한은 잔여학기로 한다.</p>	<p>제3조 (수업연한) ① <u>본 대학교</u> 신입생의 수업연한은 4년(8학기)으로 한다.<개정 2018.3.12.></p> <p>② <u>본 대학교</u> 편입생의 수업연한은 잔여학기로 한다.<개정 2018.3.12.></p>	※문구 수정
<p>제6조 (수업일수)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<개정 2014.2.24., 2017.11.29.></p> <p>②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<u>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</u>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 (수업일수)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<개정 2014.2.24., 2017.11.29.></p> <p>②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<u>고등교육법에 따라</u>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<개정 2018.3.12.></p>	※관련근거 명시
<p>제7조 (휴업일) ① 정기휴업일은 ...(중략)... 한다.</p> <p>② 졸업식, <u>입학시험</u> 기타 사정이 있을 때는 전 항의 휴업일 이외에도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 휴업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 (휴업일) ① 좌동</p> <p>② 졸업식, <u>입학시험 등</u> 기타 사정이 있을 때는 전 항의 휴업일 이외에도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 휴업할 수 있다.<개정 2018.3.12.></p>	※문구 수정
<p>제18조 (교과편성) ① 본 대학교의 교과는 <u>교양과목, 일반과목, 기초과목, 전공과목</u>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,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, 필요할 경우 필수와 선택을 혼합한 선택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 단, 제3항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및 제4항</p>	<p>제18조 (교과편성) ① 본 대학교의 교과는 <u>교양과목, 전공과목, 일반과목</u>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,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, 필요할 경우 필수와 선택을 혼합한 선택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 단, 제3항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및 제4항의 국제항공</p>	※기초과목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의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의한 교과구분 표시는 위의 기본 교과구분 표시에 병기한다.<개정 2008. 2. 11, 2010. 7. 1, 2012. 2. 20></p>	<p>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의한 교과구분 표시는 위의 기본 교과구분 표시에 병기한다.<개정 2008.2.11., 2010.7.1., 2012.2.20., 2018.3.12.></p>	
<p>제19조 (교양과목) 교양과목은 인문사회, 자연과학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<u>과할</u> 수 있다.</p>	<p>제19조 (교양과목) 교양과목은 인문사회, 자연과학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<u>편성할</u> 수 있다.<개정 2018.3.12.></p>	<p>※문구 수정</p>
<p>제36조 (전과) ①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1학년 또는 2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<u>학부(과)별 입학정원의 20%까지 전과를 허용</u>할 수 있다. 단, 학사 구조 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 2014. 9. 17></p>	<p>제36조 (전과) ①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1학년 또는 2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<u>학부(과)별 입학정원의 25%까지 전과를 허용</u>할 수 있다. 단, 학사 구조 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 2014.9.17., 2018.3.12.></p>	<p>※ 학부(과)별 전과허용비율 증가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제36조의2 (학부(과) 전공) ① 학부(과)로 입학한 학생은 <별표 2>에 따른 소속된 학부(과)의 전공분야 중 필히 하나의 주전공(이하 "제1전공"이라 한다.)을 선택·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. 단, 자유전공학부는 별도로 정한다. ② 학부(과)의 전공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[본조 신설 2018.3.12.]</p>	<p>※ 학부(과) 전공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주전공 개념 명확화</p>
<p>제37조 (부전공) ① 전공 이외의 교과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21학점 이상을 선택,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한다. ② 부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2.</p>	<p>제37조 (부전공) ① 제1전공 이수 중 제2전공으로 부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부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/p>	<p>※ 부전공에 대한 이수요건 등 세부사항은</p>

현 행	개정안	비고
<p>2. 20></p> <p>제38조 (복수전공) ① 제1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제2전공(복수전공 등)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삭 제</p> <p>③ 삭 제</p> <p>④ 복수전공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으로 한다.<개정 2008. 2. 11, 2012. 2. 20></p> <p>⑤ 복수전공의 이수는 최소한 2개 전공 이상을 이수 신청하여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며 재학연한 내에서 2개의 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⑥ 복수전공이수 인정에 필요한 소요 학점은 42학점(전공학점) 이상으로 한다. 단, 동일학부 내에서 복수전공 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⑦ 복수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과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학위를 수여한다.</p> <p>⑧ 제1전공을 이수한 자가 제2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포기 하거나 제1전공 이수기간 이내에 제2전공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. 단, 학부(과)별 운영내규에 의거 기 취득한 제2전공 교과목의 이수요건이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9. 1, 2013. 5. 15></p> <p>⑨ 제2전공의 학위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</p>	<p>[전문개정 2018.3.12.]</p> <p>제38조 (복수전공) ① 제1전공 이수 중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복수전공 이수자는 입학정원 내로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18.3.12.]</p>	<p>세칙으로 이관 및 문장 명확화</p> <p>※학칙 제38조 제4~9항은 시행세칙으로 이관 및 문장 명확화</p>

현 행	개정안	비고
<p>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.</p> <p>⑩ 복수전공 이수자는 입학정원 내로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38조의2 (학부의 전공) ① 학부로(중략).... 가능하다. ② 학부의 전공....(중략)....정한다<개정 2012.2.20.></p> <p>제38조의3 (연계/융합전공) ① 1개 이상의 학부(과)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연계전공과 2개 이상의 학부(과)가 융합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융합전공을 두며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항 신설></p> <p>②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43조 (제 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학기 수업개시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.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. 타교에 적을 둔 자 4. 장기간 무계출 결석한 자 	<p>제38조의2 삭제<2018.3.12.></p> <p>제38조의3 (연계/융합전공) ① 1개 이상의 학부(과)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연계전공과 2개 이상의 학부(과)가 융합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융합전공을 둔다.<개정 2018.3.12.></p> <p>② 제1전공 이수 중 제2전공으로 연계/융합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항 신설 2018.3.12.></p> <p>③ 연계·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3.12.></p> <p>제43조 (제 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학기 수업개시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.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. 타교에 적을 둔 자 4. 장기간 무단결석한 자<개정 2018.3.12.> 	<p>※ 제 38 조 의 2 삭제 후 제36조의2 신설</p> <p>※ 문구 수정</p> <p>※ 문장 명확화</p> <p>※ 문구 수정</p> <p>※ 문구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55조 (부속기관)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과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를 둔다. 부속기관과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의하며,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<u>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</u><개정 2007.9.1., 2008.10.1., 2009.7.1., 2012.3.29., 2013.5.15., 2013.11.13., 2014.5.22., 2015.12.11. 0000.00.00., 0000.00.00.></p> <p>② 부속기관과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의 장은 <u>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. 단, 비행교육원장 및 부원장은 부교수, 조종실기부 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비행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하며, 전산정보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</u><개정 2013.5.15., 2014.5.22., 2015.12.11.></p>	<p>제55조 (부속기관)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과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를 둔다. 부속기관과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의하며,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<u>별도로 정한다.</u><개정 2007.9.1., 2008.10.1., 2009.7.1., 2012.3.29., 2013.5.15., 2013.11.13., 2014.5.22., 2015.12.11. 2018.3.12.></p> <p>② 부속기관과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의 장은 <u>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.</u><개정 2013.5.15., 2014.5.22., 2015.12.11., 2018.3.12.></p>	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비행교육원 외 기타 부속기관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 자로 보할 수 있도록 확대</p>
<p>제60조 (등록금의 감면 및 반환) ① 등록금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<u>'대학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'에 따른다.</u><개정 2008.2.11., 2012.2.20., 2014.2.24.></p> <p>제60조의2 (등록금심의위원회) ①~②</p> <p>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<u>'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'에 따른다.</u><본조 신설 2011.2.7., 개정 2014.2.24.></p>	<p>제60조 (등록금의 감면 및 반환) ① 등록금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<u>별도로 정한다.</u><개정 2008.2.11., 2012.2.20., 2014.2.24., 2018.3.12.></p> <p>제60조의2 (등록금심의위원회) ①~②</p> <p>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<u>별도로 정한다.</u><본조 신설 2011.2.7., 개정 2014.2.24., 2018.3.12.></p>	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
<p>제63조 (위탁생) 정부 및 각 기관의 재직자로서 그 <u>소속장관</u>으로부터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라도 수학할 수 있다.</p>	<p>제63조 (위탁생) 정부 및 각 기관의 재직자로서 그 <u>소속기관</u>으로부터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라도 수학할 수 있다.<개정 2018.3.12.></p>	<p>※문구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65조의2 (장애학생 지원 등)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<u>장애학생지원운영규정에 따른다.<개정 0000.00.00.></u> [본조 신설 2012.4.1.]</p>	<p>제65조의2 (장애학생 지원 등)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<u>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8.3.12.></u> [본조 신설 2012.4.1.]</p>	
<p>제69조 (시간제 등록생) ①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연도 매 학기별 신입생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. ② 시간제 등록생 <u>운영내규</u>에 관한 사항은 <u>총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제69조 (시간제 등록생) ①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연도 매 학기별 신입생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. ② 시간제 등록생 <u>운영</u>에 관한 사항은 <u>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8.3.12.></u></p>	※문구 수정
<p>제79조 (설치 운영기간)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과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「<u>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</u>」에 따른다.<개정 0000.00.00.></p>	<p>제79조 (설치 운영기간)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과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<u>협약서</u>에 따른다.<개정 2018.3.12.></p>	※문구 수정
<p>제80조 (학사제도 적용)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, 전과, 재입학, 복수전공, 부전공, 학점교류, 유급 등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「<u>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</u>」에 따른다.<개정 0000.00.00.></p>	<p>제80조 (학사제도 적용)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, 전과, 재입학, 복수전공, 부전공, 학점교류, 유급 등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<u>협약서</u>에 따른다.<개정 2018.3.12.></p>	※문구 수정
<p>제81조 (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「<u>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</u>」에 따른다.<개정 0000.00.00.></p>	<p>제81조 (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<u>협약서</u>에 따른다.<개정 2018.3.12.></p>	※문구 수정

현행	개정안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~ 65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~ 65.</p> <p>66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② (기초과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18학년도부터 “기초과목” 이수구분은 폐지하며, 17학년도 이전 “기초과목”으로 구분된 교과목은 18학년도 이후 교과과정에 관련 교과목으로 대체 설정할 수 있다.</p>	<p>※ 기초과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</p>

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·구대조표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제6조 (입학허가 및 취소) ① 입학허가는 소정의 입학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한다.</p> <p>② 법령에 의한 정원 외 입학자의 입학허가 및 전형방법에 관하여는 <u>법령(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)에 따른다.</u></p> <p>③ 본 대학교에 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입학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입학 전의 학력 및 자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</p> <p>2. 입학지원서 및 입학구비서류 등에 허위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</p> <p>3. <u>교육법 및 동 시행령과</u> 입학전형 및 시험에 관한 제반 규정에 저촉되었을 때</p>	<p>제6조 (입학허가 및 취소) ① 입학허가는 소정의 입학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한다.</p> <p>② 법령에 의한 정원 외 입학자의 입학허가 및 전형방법에 관하여는 <u>고등교육법에 따른다.</u></p> <p>③ 본 대학교에 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입학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입학 전의 학력 및 자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</p> <p>2. 입학지원서 및 입학구비서류 등에 허위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</p> <p>3. <u>고등교육법, 입학전형 및 시험에 관한 제반 규정에 저촉되었을 때</u><개정 2018.3.12.></p>	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
<p>제7조 (등 록)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, 수강신청 및 기타 제반 절차를 필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되며, 등록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<u>'대학등록금운영에관한규정'</u>에 따른다.<개정 2014.2.24.></p>	<p>제7조 (등 록)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, 수강신청 및 기타 제반 절차를 필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되며, 등록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<u>별도로 정한다.</u><개정 2014.2.24., 2018.3.12.></p>	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
<p>제8조 (수강신청) ① ~ ⑫</p> <p>⑬ <u>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수강지도 상담을 완료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며,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수강</u></p>	<p>제8조 (수강신청) ① ~ ⑫</p> <p>⑬ <u>수강신청 전 반드시 수강지도 상담을 완료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며,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</u></p>	<p>※공학인증프로그램 외 수강신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학교육인증시행세칙에 따른다.</u> <신설 2010.7.1.></p>	<p><u>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 <신설 2010.7.1., 개정 2018.3.12.></p>	<p>청을 위한 수강 지도상담 명시</p>
<p>제9조 (교과편성) ① 교과과정은 학칙 제18조의 교과편성에 의하여 학부(과)장이 작성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<u>별도로 정하는 교과과정과 같다.</u></p>	<p>제9조 (교과편성) ① 교과과정은 학칙 제18조의 교과편성에 의하여 학부(과)장이 작성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<u>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8.3.12.></u></p>	<p>※문구 수정</p>
<p>제9조의2 (공학교육인증의 심화프로그램 운영) ①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,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, 항공전자정보공학부, 소프트웨어학과, 항공재료공학과는 비인증과정인 일반 프로그램과 인증과정인 심화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.<개정 2010.7.1., 2015.12.11.> ② 제1항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<u>운영에 관하여 학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에 따른다.</u><개정 2010.7.1.></p>	<p>제9조의2 (공학교육인증의 심화프로그램 운영) ①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,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, 항공전자정보공학부, 소프트웨어학과, 항공재료공학과는 비인증과정인 일반 프로그램과 인증과정인 심화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.<개정 2010.7.1., 2015.12.11.> ② 제1항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<u>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<개정 2010.7.1., 2018.3.12.></p>	<p>※문구 수정</p>
<p>제9조의3 (국제항공교육인증의 심화프로그램 운영) ① <u>항공·교통·물류·우주법학부</u>, 항공운항학과, <u>경영학과</u>는 일반 교육과정과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.<개정 2010. 7. 1, 2012. 2. 20> ② 제1항의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 <u>운영에 관하여 학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내규에 따른다.</u><개정 2010.7.1.></p>	<p>제9조의3 (국제항공교육인증의 심화프로그램 운영) ① <u>항공교통물류학부</u>, 항공운항학과, <u>경영학부</u>는 일반 교육과정과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.<개정 2010.7.1., 2012.2.20., 2018.3.12.> ② 제1항의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 <u>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<개정 2010.7.1., 2018.3.12.></p>	<p>※문구 수정</p>
<p>제14조 (자격상실) <u>학칙 제30조제2항에 저촉되어 시험에 응시하지</u></p>	<p>제14조 (자격상실) <u>학점 취득 자격이 상실되는 성적은 다음 각</u></p>	<p>※ 부정행위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못한 자는 그 학기 해당과목의 학점 취득 자격이 상실되며, 학적부에 F로 기재한다.</p> <p>제15조 (성적평가) ① 성적평가는 <u>수시, 기말시험</u> 등 시험성과 과 출석, 과제 등 평소성적을 종합평가 하며, 전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 유형 I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기타 과목의 특성으로 총장이 승인한 과목은 상대평가 유형 II 또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. <u>또한 상대평가 비율은</u>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<개정 2009. 3. 1, 2012. 2. 20, 2013. 5. 15, 2015. 2. 27, 2015.12.11></p> <p>1. 상대평가 유형 I : A⁺, A⁰(30% 이내), A⁺, A⁰, B⁺, B⁰(70% 이내)<개정 2015. 2. 27></p> <p>2. 삭제 <2015. 2. 27></p> <p>3. 삭제 <2015. 2. 27></p> <p>4. 상대평가 유형 II : A⁺, A⁰(40% 이내)<신설 2015. 2. 27></p> <p>② 매학기 <u>수업일수의 2/3선을 경과</u>하고 학기말 시험 이전 또는 동 시험기간 중에 질병(입원가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) 또는 군입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학기 중에 평가한 성적을 학기말 <u>성적</u>으로 대체할 수 있</p>	<p><u>호에 해당되며, 학적부에 F로 기재한다.</u></p> <p>1. <u>학칙 제30조제2항에 의거 총 수업시간 수의 1/4이상 결석한 과목의 성적</u></p> <p>2. <u>시험 중 부정행위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</u></p> <p>3. <u>기타 관련법에 의거 부정한 청탁 등의 행위로 취득한 성적</u> [전문 개정 2018.3.12.]</p> <p>제15조 (성적평가) ① 성적평가는 <u>정기, 수시시험</u> 등 시험성과 과 출석, 과제 등 평소성적을 종합평가 하며, 전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 유형 I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기타 과목의 특성으로 총장이 승인한 과목은 상대평가 유형 II 또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. <u>상대평가 비율은</u>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<개정 2009.3.1., 2012.2. 20., 2013.5.15., 2015.2.27., 2015.12.11., 2018.3.12.></p> <p>1. 상대평가 유형 I : A⁺, A⁰(30% 이내), A⁺, A⁰, B⁺, B⁰(70% 이내)<개정 2015.2.27.></p> <p>2. 삭제 <2015.2.27.></p> <p>3. 삭제 <2015.2.27.></p> <p>4. 좌동</p> <p>② <u>매학기 수업종료일기준 4주 내에 질병(입원가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) 또는 군 입대로 학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</u>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학기 중에 평가한 성적을 학기말 <u>시험성적</u>으로 대체</p>	<p>부정한 청탁으로 취득한 과목에 대한 성적부여 내용 추가 (학칙 제29조제1항 구체화)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총 4회 결석에 F학점 성적부여에 원칙에 따라 제15조제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다.<개정 2014. 2. 24, 2015. 12. 11, <u>0000.00.00.</u>></p> <p>제17조 (성적정정)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으며, 착오로 인한 정정은 담당교수가 소정의 정정원에 사유를 기재하고 성적정정에 대한 근거서류(답안지 등)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8조 (성적통보) 성적은 매 학기 각 학부(과)장 및 학부형에게 통보한다.</p> <p>제24조 (부전공) ① 부전공은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1. 2학년(1학년 수료) 또는 3학년(2학년 수료) 진급 예정인 재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에 원하는 학부(과)에 부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11, 2009. 3. 1, 2012. 2. 20></p> <p>2.~3. (중략)</p> <p>4. 모든 학부(과)는 부전공(학과)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학부(과)에 따라 부전공을 신청하는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	<p>할 수 있다. <개정 2014.2.24., 2015.12.11., 2017.11.29., <u>2018.3.12.</u>></p> <p>제17조 (성적정정)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으며,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정은 담당교수가 소정의 정정원에 사유를 기재하고 성적정정에 대한 근거서류(답안지 등)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<u>2018.3.12.</u>></p> <p>제18조 (성적공시 등) 성적은 매 학기 말 학생 및 소속 학부(과)장, 학부형에게 공시 및 통보한다.<개정 2018.3.12.></p> <p>제24조 (부전공) ① 학칙 제36조의2에 따른 주전공(이하 “제1전공”이라 한다) 외에 제2전공으로 부전공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개정 2018.3.12.></p> <p>1. 2학년 이상(1학년 수료 이상) 진급예정인 재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에 원하는 학부(과)에 부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11., 2009.3.1., 2012.2.20., <u>2018.3.12.</u>></p> <p>2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모든 학부(과)는 부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부(과) 수용능력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부전공자 수를 제한할</p>	<p>2항의 사유에 대한 성적 대체가능한 일수 조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학칙에 따른 주전공 개념 명확화</p> <p>※부전공 신청 자격 연계/융합전공과 동일화</p> <p>※문구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5.~6. (중략) 7. 부전공 이수를 위한 수강 지도는 해당 <u>학부(과)장</u>이 한다. 8. 부전공의 이수 사정은 부전공학부(과)에서 하되, <u>주 전공</u> 이수 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, 졸업학기말 성적 산출 후 부전공학부(과)에서 부전공 과목 이수를 확인하여 부전공 이수 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면 부전공 과목학점으로 인정한다.<개정 2007. 9. 1> ② 부전공의 교과목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<u>학부(과) 운영 내규에 따른다.</u><개정 2007.9.1., 2013.5.15.></p>	<p><u>수 있다.<개정 2018.3.12.></u> 5.~6. (현행과 같음) 7. 부전공 이수를 위한 수강 지도는 해당 <u>부전공 학부(과)장</u>이 한다.<개정 2018.3.12.> 8. 부전공의 이수 사정은 부전공학부(과)에서 하되, <u>제1전공</u> 이수 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, 졸업학기말 성적 산출 후 부전공학부(과)에서 부전공 과목 이수를 확인하여 부전공 이수 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면 부전공 과목학점으로 인정한다.<개정 2007.9.1., <u>2018.3.12.</u>> ② 부전공의 교과목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<u>별도로 정한다.</u><개정 2007.9.1., 2013.5.15., <u>2018.3.12.</u>></p>	<p>※문구 수정</p>
<p>제25조 (복수전공) ① <u>학칙 제38조에 의한 복수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신청자격은 다음에 의한다.</u> 가. <u>본 대학교 2학년(1학년 수료) 또는 3학년(2학년 수료) 진급 예정인 재학생.</u> <개정 2007. 9. 1, 2008. 2. 11, 2012. 2. 20> 나. <u>삭제<2012. 2. 20></u> 다. <u>제1전공에 관계없이 본 대학교 전 학부(과)를 복수전공으로 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</u> 라. <u>복수전공은 당해 학부(과)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복수 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.</u> 마. <u>복수전공 이수를 위하여 취득한 학점은 제1전공 졸업학점에 포</u></p>	<p>제25조 (복수전공) ① <u>제1전공 외에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u> 1. <u>본 대학교 2학년 이상(1학년 수료 이상) 진급예정인 재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에 원하는 학부(과)에 복수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.</u> 2. <u>모든 학부(과)는 복수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부(과) 수용능력 및 특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.</u> (삭제) 3. <u>복수전공 이수를 위하여 취득한 학점은 제1전공 졸업학점에</u></p>	<p>※문구 수정 ※제25조 전문 개정 ※복수전공 신청자격 연계/융합전공과 동일화 ※문구 수정 (현행 다목 및 라목 통합) ※호로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함한다.</p> <p>2. 복수 전공 신청은 매학기 개강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1전공이수 학부(과)장과 복수전공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2. 2. 20></p> <p>3.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해당 <u>학부(과)장의 심의를 거쳐</u>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4. <u>학점이수는 다음과 같다.</u> 가. 제1전공 이수 학부(과) 학생은 복수전공 학부(과)의 전공과목(학부(과) 지정 전공필수과목 반드시 이수) 중 42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, 동일 학부 내 복수전공자는 전공과목(학부(과) 지정 전공필수과목 반드시 이수) 중 36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9. 1, 2012. 2. 20, 2015. 2. 27> 나. 복수전공 학부(과)의 사정에 따라 전공과목 42학점 이외 9학점까지 전공과목 중에서 선수로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. <u>다. 이수학기동안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자는 복수전공을 인정하지 아니하며, 기 취득학점의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한다. 단, 동일학부 내 복수전공 신청자의 기 취득학점 이수구분은 예외로 한다.<개정 2012. 2. 20></u></p>	<p>포함한다.</p> <p>4. 복수전공 신청은 매학기 개강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1전공이수 학부(과)장과 복수전공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5.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<u>해당 복수전공 학부(과)장이 시행하고</u>,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6. <u>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.</u> 가. 좌동 나. 좌동 <u>다. 제1전공을 이수한 자가 복수전공 이수를 중도포기 하거나 제1전공 이수기간 내 소정의 복수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복수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학부(과)별 운영내규에 따라 기 취득한 복수전공 교과목이 부전공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u> <u>라.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 취득학점의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한다. 단, 동일학부 내 복수전공 신청자의 기 취득학점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※호로 변경</p> <p>※호 이동</p> <p>※호이동, 문구수정</p> <p>※호이동, 문구수정</p> <p>※학칙 제38조 제5~9항 세칙으로 이관</p> <p>※학칙 제38조 제5~9항을 세칙으로 이관받고, 기존 시행세칙 내용과 통합하여 개정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<u>라.</u>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 및 이수학점 인정은 제1전공 이수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, <u>졸업 학기말</u> 성적 산출 후 복수전공 학부(과)에서 복수전공 과목 이수를 확인하여 복수전공 이수 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면 복수전공 과목학점으로 인정한다.<개정 2007. 9. 1></p> <p><u>마.</u> <u>부전공 학부(과)를 복수전공 학부(과)로</u> 신청할 경우 부전공 자격의 효력은 상실한다.<신설 2015. 12. 11></p> <p><u>바.</u> 복수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실험실습비 등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.<신설 2015. 12. 11></p> <p><u>5.</u>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칙 제28조에 의한 <u>졸업증서</u>를 수여한다.</p> <p><u>6.</u> 삭제<2013. 5. 15></p> <p><u>7.</u> 삭제<2007. 9. 1></p> <p><u>8.</u> 삭제<2012. 2. 20></p> <p><u>②</u> 삭제<2012. 2. 20></p>	<p><u>마.</u> <u>복수전공을 이수 한 자가 제1전공의 이수요건과 제34조의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였을 경우 복수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자유전공학부 소속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바.</u>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 및 이수학점 인정은 제1전공 이수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, <u>졸업 학기말에</u> 성적 산출 후 복수전공 학부(과)에서 복수전공 과목 이수를 확인하여 복수전공 이수 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면 복수전공 <u>과목으로</u> 인정한다.</p> <p><u>사.</u> <u>부전공 이수 중 동일 전공을 복수전공으로</u> 신청할 경우 부전공 자격의 효력은 상실한다.</p> <p><u>아.</u> 복수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실험실습비 등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.</p> <p><u>7.</u>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칙 제28조에 의한 <u>학위</u>를 수여한다.</p> <p><u>②</u> <u>복수전공의 교과목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 [전문개정 2018.3.12.]</p>	<p>※자유전공학부 예외 단서조항 삽입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항 신설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5조의2 (학부 내 전공) 학부 내 전공신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필히 하나의 전공을 신청하여 배정 받아야 한다.<개정 2013.5.15.></p> <p>2. 전공의 배정은 제1지망 전공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제1지망 전공 신청자가 많아 학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정의 배정 원칙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나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3.5.15.></p> <p>3. 학부 내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소속한 학부 내에 개설된 <u>교양과목, 기초과목 및 전공과목</u>을 이수하여야 하며, 이수학점은 학부내규에 따른다.<개정 0000.00.00.></p>	<p>제25조의2 (학부 내 전공) 학부 내 전공신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삭제<2018.3.12.></p> <p>2. 전공의 배정은 제1지망 전공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제1지망 전공 신청자가 많아 학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정의 배정 원칙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나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3.5.15.></p> <p>3. 학부 내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소속한 학부 내에 개설된 <u>전공과목</u>을 이수하여야 하며, 이수학점은 학부내규에 따른다.<개정 2018.3.12.></p>	<p>※학칙 제36조의2에 근거 있어 동일내용 삭제</p> <p>※기초과목 폐지에 따른 개정</p>
<p>제25조의3 (연계/융합전공) ① <u>연계·융합전공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<개정 0000.00.00.></u></p> <p>1. 연계·융합전공 운영위원회 구성은 <u>다음에 의한다.</u></p> <p>가. 해당 연계·융합전공이 설치되는 단과대학의 학장은 연계·융합전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나. 연계·융합전공 운영위원회는 관련 전공교수로 구성한다.</p> <p>2. 연계·융합전공 운영위원회 기능은 <u>다음에 의한다.</u></p> <p>가. 연계·융합전공 주임교수 선임</p> <p>나. 교과과정 운영 등 중요사항 논의</p>	<p>제25조의3 (연계·융합전공) ① <u>학칙 제38조의3에 의한 연계·융합전공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,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8.3.12.></u></p> <p>1. 연계·융합전공 운영위원회 구성은 <u>다음 각 목과 같다.<개정 2018.3.12.></u></p> <p>가. 해당 연계·융합전공이 설치되는 단과대학의 학장은 연계·융합전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나. 연계·융합전공 운영위원회는 관련 전공교수로 구성한다.</p> <p>2. 연계·융합전공 운영위원회 기능은 <u>다음 각 목과 같다.<개정 2018.3.12.></u></p> <p>가. 연계·융합전공 주임교수 선임</p> <p>나. 교과과정 운영 등 중요사항 논의</p>	<p>※문구 수정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② 연계·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 <u>2학년 이상 재학생</u>으로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2. 신청 시기 및 절차는 <u>다음에 의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3. 학점이수 및 수강지도는 <u>다음에 의한다.</u></p> <p>가. 연계·융합전공 학점 이수는 36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나.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·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이수 학점의 <u>1/3이내에서</u> 중복인정 받을 수 있다.</p> <p>4. <u>졸업요건은 다음에 의한다.</u></p> <p>가. 제1전공의 졸업요건과 연계·융합전공의 <u>졸업요건</u>이 충족되었을 때 <u>동시에 학위를 수여한다.</u></p> <p>나. 제1전공을 이수한 자가 <u>연계·융합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포기 하거나 제1전공 이수기간 이내에 연계/융합전공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.</u></p> <p>다. <u>연계·융합전공의 학위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.</u></p>	<p>② 연계·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 <u>2학년 이상(1학년 수료 이상) 진급예정인 재학생</u>으로 한다. <개정 2017.3.21., <u>2018.3.12.</u>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2. 신청 시기 및 절차는 <u>다음 각 목과 같다.<개정 2018.3.12.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3. 학점이수 및 수강지도는 <u>다음 각 목과 같다.<개정 2018.3.12.></u></p> <p>가. 연계·융합전공 학점 이수는 36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나.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·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<u>12학점 이내에서</u> 중복인정 받을 수 있다.<개정 2018.3.12.></p> <p>4. <u>연계·융합전공 이수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.<개정 2018.3.12.></u></p> <p>가. 제1전공의 졸업요건과 연계·융합전공의 <u>이수요건</u>이 충족되었을 때 <u>학칙 제28조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.<개정 2018.3.12.></u></p> <p>나. 제1전공을 이수한 자가 <u>연계·융합전공 이수를 중도포기 하거나 제1전공 이수기간 내 소정의 연계·융합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계·융합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.<개정 2018.3.12.></u></p> <p>다. <u>연계·융합전공을 이수 한 자가 제1전공의 이수요건과 제34조의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였을 경우 연계·융합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자유전공학부 소속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</u></p>	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중복인정학점 명확화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문구 수정 및 자유전공학부 예외 단서조항 삽입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항 신설)</p> <p>제34조 (졸업사정) ① 졸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7. 1, 2012. 2. 20, 2013. 5. 15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 이수학점 130학점이상 취득<개정 2015. 3. 1> 2. 교양과목 영역별 지정 이수학점 취득<개정 2013. 5. 15, 2015. 12. 11> 3. <u>교양필수, 기초필수 및 전공필수과목</u>의 전 학점 취득<개정 2008.2.11> 4. <u>기초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57학점이상</u> 취득<개정 2008.2.11, 2010.7.1> 5.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2.00이상 6. 졸업인증제를 통과한 자(북한이탈주민, 학군제휴 군위탁생, 계약학과 학생 제외)<개정 2012. 2. 20, 2014. 9. 17, 2015. 2. 27> 7. 삭 제 8. 해당 학부(과)별 운영내규에 의거 요구되는 졸업요건을 충족자<신설, 2012. 2. 20> <p>② 전 1항에 제1호 내지 제5호, 제8호에 저촉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때는 그 학년도에 졸업할 수 있다. 단 전 1항 제6호외 졸업요건 충족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.<개정 2008. 2. 11, 2015. 2. 27></p> <p>③ 삭 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018.3.12.></u></p> <p>③ 연계·융합전공의 교과목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항 신설 2018.3.12.></p> <p>제34조 (졸업사정) ① 졸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 이수학점 130학점이상 취득 2. 교양과목 영역별 지정 이수학점 취득 3. <u>교양필수, 전공필수과목</u>의 전 학점 취득 4. <u>전공과목 57학점이상</u> 취득 5.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2.00이상 6. 졸업인증제를 통과한 자(북한이탈주민, 학군제휴 군위탁생, 계약학과 학생 제외) 7. 해당 학부(과)별 운영내규에 의거 요구되는 졸업요건을 충족 8. <u>전 4호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공학부 졸업대상자의 전공과목 취득학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 <p>② 전 1항에 제1호 내지 제5호, 제8호에 저촉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때는 그 학년도에 졸업할 수 있다. 단, 전 1항 제6호외 졸업요건 충족한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.</p>	<p>※항 신설</p> <p>※기초과목 이수구분 폐지에 따른 문구 수정</p> <p>※자유전공학부 예외사항 호 신설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④ 부전공 이수 인정은 전 1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<u>주전공 이외에 부전공 이수학점 21학점(필수과목 학점 포함)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.</u></p> <p>⑤ 복수전공 이수 인정은 전 1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.<개정 2012. 2. 20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삭제<2012. 2. 20> 2. 삭제<2012. 2. 20> 3. 삭제 <2007. 9. 1> <p>⑥ 삭제<2012. 2. 20></p> <p>⑦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학칙 제26조에 의거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<신설 2010. 7. 1, 개정 2012. 2. 20></p> <p>⑧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학칙 제26조에 의거 해당 학부(과)별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 내규의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.<신설 2012. 2. 20></p>	<p>③ 부전공 이수 인정은 전 1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<u>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.</u></p> <p>④ 복수전공 이수 인정은 전 1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<u>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.</u></p> <p>⑤ 연계·융합전공 이수 인정은 전 1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<u>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다.</u></p> <p>⑥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학칙 제26조에 의거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⑦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학칙 제26조에 의거 해당 학부(과)별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 내규의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18.3.12.]</p>	<p>※ 부/복수/연계·융합전공 이수인정조건 명시</p> <p>※항 이동</p> <p>※항 이동</p>
<p><u>제34조의3 (졸업인증제) ① 제34조제1항제6호에 의한 졸업인증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2. 2. 20, 2015. 12. 11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영어분야 2. 삭제<2012. 2. 20> 	<p><u>제34조의3 (졸업인증제) ① 제34조제1항제6호에 의한 졸업인증 선택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글로벌소통역량 인증</u> 2. <u>전문탐구역량 인증</u> 3. <u>통섭융합역량 인증</u> 4. <u>창의도전역량 인증</u> 	<p>※대학 핵심역량을 반영한 졸업인증제 개선에 따른 호 신설 및 개정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② 졸업인증의 각 분야별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<u>따로</u> 정한다.</p> <p>③ 북한이탈주민, 학군제휴 군위탁생, 계약학과 학생은 예외로 한다.<개정 2012. 2. 20, 2014. 9. 17, 2015. 2. 27></p> <p>④ <u>제3항 규정 외 예외로</u>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12. 2. 20></p> <p>⑤ 졸업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해당 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로 한다. 단, 수료 이후에 이를 필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말에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</p> <p>제40조 (집회 및 행사) ① 행사 및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<u>행사일</u> 7일 전까지 학생처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~51.</p>	<p>5. 윤리인성역량 인증</p> <p>② 졸업대상자는 <u>제1항의 졸업인증 선택분야 중 글로벌소통역량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, 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</u> 정한다.</p> <p>③ 북한이탈주민, 학군제휴 군위탁생, 계약학과 학생은 예외로 한다.</p> <p>④ <u>전 3항 외 예외로</u>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⑤ 졸업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해당 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로 한다. 단, 수료 이후에 이를 필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말에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18.3.12.]</p> <p>제40조 (집회 및 행사) ① 행사 및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<u>학생 또는 학생단체는</u> 행사일 7일 전까지 학생처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3.12.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~51.</p> <p>52.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② (경과조치) 개정세칙 중 제34조의3(졸업인증제)는 2018학년도 신·편입생부터 적용하며, 2017학년도 이전 신·편입생</p>	<p>※문구 수정 및 졸업인증 최소 기준 명시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전문개정</p> <p>※문구 수정</p> <p>※개선된 졸업인증제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	<u>은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.</u>	